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0
----------	----

2022. 10. 17.(월)  
행정문화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5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17일

-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두환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공유재산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○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임기 관련 사항을 「공유재산 및 물



64.25% 상승)을 반영하여 5천만원으로 기준을 상향함.

- 심의 생략 기준 상향을 통해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·처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조치는 타당함.

○ 안 제12조제3항(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기준 마련)

- 시행령 제7조제1항 중요재산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1건당 기준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한 개정으로 타당한 조치임.

○ 안 제61조제3항 신설 (수급자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 구체적 명시)

-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최초 납부기한부터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변상금 유예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시행령과 조례의 일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임

○ 안 제66조의2 신설(공유재산 등의 증감 및 현황 공개 규정 신설)

-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증감 현황 공개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여 도에서 관리 공유재산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신설 조항이라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토지”를 “토지의 취득·처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3천만원 이하(특별시·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)”를 “5천만원 이하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“법 제10조 및 영 제7조”를 “법 제10조의2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”를 “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

제16조제1항 중 “무상사용·수익허가대상”을 “무상사용허가 대상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“(사용·수익허가의 제한)”을 “(사용허가의 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각각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사용·수익허가)”를 “(사용허가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각각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21조의 제목 “(사용·수익허가부의 비치)”를 “(사용허가부의 비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사용·수익허가부”를 “사용허가부”로 한다.

제23조제3항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31조제4항 전단 중 “제4항에 의한”을 “제3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2조의 제목 “(대부료의 감면)”을 “(사용료·대부료의 감면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지역 특산물”을 “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”으로 한다.

제3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·전시·판매를 위한 경우 : 100분의 30
2.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: 100분의 50
3.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: 100분의 100

제33조제4항 본문 중 “충청북도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”으로 한다.

제40조제3호 중 “농업인”을 “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매각 신청인이 10년 이상 소유한 건물의 부지가 맞닿은 도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로와 접할 수 없고, 그 도유지를 경쟁 입찰로 매각하여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 해당 건물의 부지 소유자에게 재산상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어 매각 신청인에게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

제45조를 삭제한다.

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,”를 “신축 또는 증축할 때에는 공공성·상징성·개방성·확장성 등을 고려하여”로, “적합”을 “적합하게 설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확보

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청사 및 의회청사의 면적과 도지사의 집무실 면적은 영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.

제6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부터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6조의2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) ①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전년도 결산 내용으로 하며,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·운영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⑦ (생략)</p> <p>제5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</p>	<p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·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⑤ ~ ⑦ (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)</p> <p><u>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⑨ (현행 제7항과 같음)</p> <p>제5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



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 제곱미터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 제곱미터

제16조(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)

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·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.

② (생략)

제19조(사용·수익허가의 제한)

① 행정재산 사용·수익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, 해당

제16조(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)

① -----  
-----  
----- 무상사용허가 대상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 -----

----- 사용허가 -----  
-----  
-----

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·수익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2. (생략)

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행정재산 사용·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

6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

7. (생략)

제21조(사용·수익허가부의 비치)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,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23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· 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

-----  
-----  
-----

② -----  
-----  
사용허가-----  
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사용허가) -----  
사용허가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사용허가-----  
-----

6. 사용허가-----  
-----

7.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사용허가부의 비치) -----  
-----  
-- 사용허가부-----  
-----.

제23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사용허가-----



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

제32조(대부료의 감면) ①·②  
(생략)

③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 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2. (생략)

3.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지역 특산물을 생산·전시·판매를 위한 경우 : 100분의 30

<신설>

제33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) ① ~ ③ (생략)

-----  
-----.

제32조(사용료·대부료의 감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-----  
-----  
-----

④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 재산의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·전시·판매를 위한 경우: 100분의 30

2.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50

3.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100

제33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. 다만,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도 수입으로 한다.

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. (생략)
3.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)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
4. ~ 8. (생략)

<신설>

④ -----  
----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-----  
-----.

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-----  
-----  
-----
4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매각 신청인이 10년 이상 소유한 건물의 부지가 맞닿은 도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로와 접할 수 없고, 그 도유지를 경쟁 입찰로 매각하여 소

제45조(청사의 부지) 청사의 부지  
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 
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 
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 
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「건  
축법」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 
수 있다.

제46조(청사 등의 설계) ① 청사  
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  
청사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따  
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, 다음 각  
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 설>

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  
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  
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 
별표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.

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  
되면 해당 건물의 부지 소유  
자에게 재산상 상당한 손해가  
예상되어 매각 신청인에게만  
매각이 불가피한 경우

<삭 제>

제46조(청사 등의 설계) ① -----  
-- 신축 또는 증축할 때에는 공  
공성·상징성·개방성·확장성  
등을 고려하여 -----  
--- 적합하게 설계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법  
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  
록 한 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  
라 확보

② 청사 및 의회청사의 면적과  
도지사의 집무실 면적은 영 제95  
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  
합하여야 한다.



③ 청사 등 공용·공공용 건물  
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 
때에는 별표에 따른 기준에 적  
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.

제61조(변상금의 부과) ①·②  
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삭제>

제61조(변상금의 부과) ①·②  
(현행과 같음)

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최초  
납부기한부터 그 징수를 미룰  
수 있는 기한은 1년으로 한다.

제66조의2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  
상황의 공개) ① 법 제92조에  
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 
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 
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  
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전년도  
결산 내용으로 하며, 도 홈페이  
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.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“사용허가”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92조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**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**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 <개정 2022. 4. 20. 시행 2023. 1. 1.>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**제10조의3(공유재산심의회)의 구성 및 운영)**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(이하 “공유재산심의회”라 한다)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1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
2. 국유·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3. 그 밖에 지방재정, 부동산,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

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공유재산심의회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17조(사용료 감면)**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“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

2. 제13조제3항제21호·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
3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. 다만,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4.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,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

**제35조(대부료의 감면) ②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: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대부료의 100분의 50
  - 가.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
  - 나. 제29조제1항제20호·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
  - 다.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,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: 대부료의 100분의 30

**제81조(변상금) ④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.

1.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
2.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
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
4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

**제95조(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)**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: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(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)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·보좌하는 기관(의회사무기구·소속기관·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)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(임차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2.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: 지방의회(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)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.

1.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.
2.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.
3.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.